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1. . .<br>(제 회)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권덕철<br>(보건복지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1. . .             |

법제처 심사 전

## 1. 개정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 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3항까지”로,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도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관련 시·군·구 간 조정이 필요하여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 관련 시·군·구간 조정이 필요하여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사항
3.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위원 섭외가 어려워 시·군·구에서 심의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항
4. 그 밖에 시·도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도 소속 4급 공무원 이상(시·군·구는 5급 공무원 이상)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또는”을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양육”을 “가정위탁보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가정위탁의 유형)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가정위탁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2. 전문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3.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제16조의2(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친생부모 등의 입양 동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보호조치 결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후관리)”를 “(양육상황 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으로”를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인력으로”,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하여”를 “가정위탁하여”로, “가정을”을 “가정, 제15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및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보호조치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의 주소지를”로, “필요한 지도·관리를”를 “양육상황 점검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과 보호조치 종료 후 사후관리 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및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 등 아동의 보호를 의뢰한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1항 단서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보호대상아동”을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퇴소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을 “퇴소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로 한다.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

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친(양친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15조의4에 따른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보유한 아동 및 보호자  
의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
4.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양부모의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이  
수 자료 또는 정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의 예방접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아동의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이 보유한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유한 아동 및 보  
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보유한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0.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보유한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자

료 또는 정보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전화

센터가 보유한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아동의 학생생활기록부에 관한 자료 또

는 정보

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1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보호종료아

동의 연락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정위탁부모의 요양급여에 관한 자

료 또는 정보

② 법 제15조의2 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연계 정보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5조의2 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 제6항에 따라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치하여야 한다.

1.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정보의 보유기간에 관한 고시

2.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

3. 아동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4. 아동정보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5. 아동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제21조의4(신청에 따른 가정복귀)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이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교육·심리적 치료를 말한다.

1.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문 형태의 상담을 포함한다)

3. 가족재결합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체험 활동 형태의 교육 및 상담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및 가정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심리적 치료를 받은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복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정복귀 결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상담·교육·심리적 치료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호의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를 “호와 제2항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상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2제3항”을 “법 제22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3항”을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법 제22조의2제3항”을 “교육감이 법 제22조의2제4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 및 제4항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각각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26조의3의 제목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아동

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을 “아동정보시스템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5조”를 “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3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을 “:”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공무원”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인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공무원”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공무원이나”를 “공무원이나 민간전문인력”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죄(제8조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를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제14조까지”를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법 제17조제2호의 죄

별표 13 제1호마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아목, 자목 및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다.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법 제75조제3항<br>제1호의3 | 150 | 300 |
| 라.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5조제3항<br>제1호의4 | 150 | 300 |
| 마. 법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 법 제75조제3항          | 150 | 300 |

|                                                                        |              |  |  |
|------------------------------------------------------------------------|--------------|--|--|
| <u>사유 없이 상담 · 교육 · 심리적 치료</u><br><u>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u><br><u>자</u> | <u>제1호의5</u> |  |  |
|------------------------------------------------------------------------|--------------|--|--|

##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 제23조, 제25조의2, 제26조의3, 제45조, 제50조, 제57조제3항제2호 및 동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3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도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br>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관련 시·군·구 간 조정이 필요하여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사항<br>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 관련 시·군·구 간 조정이 필요하여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사항<br>3.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위원 섭외가 어려워 시·군·구에서 심의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항<br>4. 그 밖에 시·도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                                                  |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                                                                                                                                                                                                                                                                                                                                                            |

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도 소속 4급 공무원 이상(시·군·구는 5급 공무원 이상)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  
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  
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  
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  
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심의  
위원회(제13조의2에 따른 소위  
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  
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⑤ 심의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  
다.

④ ----- 제3항까지-----  
-----사례결정위원회-----  
-----  
-----  
-----.

제1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① -----  
-----  
-----  
----- 사례  
결정위원회-----

서 같다)의 구성 및 운영 현황  
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가정위탁보호 등의 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또는 가  
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고 그 사  
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아동  
복지시설의 장(해당 보호대상아  
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만 해  
당한다) 및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  
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가정위탁보호 등의 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  
-----  
-----  
-----  
-----  
----- 가정위탁보  
호를-----  
-----.

② -----  
-----  
-----  
----- 가정위탁보호-----  
-----  
-----  
-----  
-----  
-----  
-----

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

제14조의2(가정위탁의 유형)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가정위탁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2. 전문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3.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제16조의2(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친생부모 등의

<신 설>

제17조 (생 략)

제18조(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하여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입양 동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결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양육상황 점검 등) ① ---  
-----  
-----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인력으로 -- 가정위탁  
하여 -----  
---- 가정, 제15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및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보호조치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의 주소지를 --- 양육상황 점검을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과 보호조치 종료 후 사후관리 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및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 등 아동의 보호를 의뢰한 기



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 아  
동복지시설의 장, 전문치료기관  
의 장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통  
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 <신 설>

제5호까지-----  
퇴소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  
를-----  
-----.

#### 제21조의3(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  
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  
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친  
(양친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  
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15조의4에 따른 아동보  
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  
사에 관한 정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보유한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
4.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양  
부모의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이수 자료 또는 정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의 예방접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아동의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이 보유한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유한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보유한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0.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보유한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전화센터가 보유한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아동의 학생생활기록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1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보호종료아동의 연락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정위탁부모의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② 법 제15조의2 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연계 정보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5조의2 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신 설>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 제6항에 따라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치하여야 한다.

1.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정보의 보유기간에 관한 고시

2.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

3. 아동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4. 아동정보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5. 아동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제21조의4(신청에 따른 가정복지)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이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교육·심리적 치료를 말한다.

1.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문 형태의 상담을 포함한다)

3. 가족재결합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체험 활동 형태의 교육 및 상담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및 가정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심리적 치료를 받은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복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정 복귀 결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상담·교육·심리적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2. (생략)

3.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생략)

③ (생략)

제25조(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생략)

<신설>

치료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아동정보시스템-----  
-----  
-----  
-----  
-----  
-----  
-----  
-----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3. (생략)

④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학교 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 호와 제2항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상호 -----  
-----  
-----  
-----  
-----  
-----  
-----.

④ 법 제22조의2제4항-----  
-----  
-----  
-----.

1. ~ 3. (현행과 같음)

⑤ -----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4항-----  
-----  
-----  
-----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이 조에서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례관

-----  
-----.

⑥ ----- 교육감이 법 제22조의2제4항-----

-----  
-----  
-----  
-----.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  
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해  
야 한다.

⑤ (생략)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② (생략)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  
다.

1. (생략)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아동복지 관련 기  
관

3. (생략)

④ (생략)

제26조의3(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  
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국가아동학대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법 제28조의2제3항 각 호의

-----  
아동정보시스템-----  
-----  
-----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기관 및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  
----- 아동정보시스템-----  
-----  
-----.

1. ~ 7. (현행과 같음)

②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③·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6항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때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안  
동정보시스템상-----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38조(자립지원) ① (생 략)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3. (생 략)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 제

② 법 제4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  
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  
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  
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2. 3. (생 략)

제50조(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  
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① 법 제48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  
탁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제38조(자립지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

1. 가정위탁보호 -----  
-----

2. 3. (현행과 같음)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  
-----  
-----  
-----.

1. 아동정보시스템-----  
-----  
-----  
-----

2. 3. (현행과 같음)

제50조(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  
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① -----  
-----  
-----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생략)

2.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의  
운영

3. (생략)

② (생략)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 16. (생략)

② (생략)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  
-----  
-----  
-----  
-----  
-----  
-----  
-----  
-----  
-----  
-----.

1. 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3까지-----

2.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

3.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 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2.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 제7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3. ~ 5. (생략)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

③

1. (현행과 같음)
2. -----  
-----  
----- 아동정보시스템  
-----  
-----  
-----
3. ~ 5. (현행과 같음)
6. -----  
:  
-----  
-----  
-----

|                                                                                                |                                                                                                                                                                                                                          |
|------------------------------------------------------------------------------------------------|--------------------------------------------------------------------------------------------------------------------------------------------------------------------------------------------------------------------------|
| <p>행위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 .<br/>관리에 관한 사무</p> <p>7. (생 략)</p> <p>④ (생 략)</p> <p><u>&lt;신 설&gt;</u></p> | <p>-----</p> <p>-----</p> <p>7.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의 2제5항에 따라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p>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  
(제18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 방법                                                                                                                                                                                                                                                                                                                                                                                                                                                                                                                                                                                                                                                                                                            |
|---------|---------------------------------------------------------------------------------------------------------------------------------------------------------------------------------------------------------------------------------------------------------------------------------------------------------------------------------------------------------------------------------------------------------------------------------------------------------------------------------------------------------------------------------------------------------------------------------------------------------------------------------------------------------------------------------------------------------------|
| 1. 상담   | <p>가. 최초 상담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b>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b>의 직원이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li> <li>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li> <li>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상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ol> <p>나. 최초 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p> <p>다. 상담 결과를 활용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관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결과를 보호기관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상담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p> |
| 2. 심리검사 | <p>가. 심리검사는 상담 결과와 아동의 가정환경 및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아동의 지능·인지·정서·행동 및 발달상태를</p>                                                                                                                                                                                                                                                                                                                                                                                                                                                                                                                                                                                                                                          |

|            |                                                                                                                                                                                                                                                                                                                                                                                                                                                                                                                                                                                                                                |
|------------|--------------------------------------------------------------------------------------------------------------------------------------------------------------------------------------------------------------------------------------------------------------------------------------------------------------------------------------------------------------------------------------------------------------------------------------------------------------------------------------------------------------------------------------------------------------------------------------------------------------------------------|
|            | <p>평가할 수 있는 종류의 검사를 선별하여 실시한다.</p> <p>나. 심리검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li> <li>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ol> <p>다. 심리검사 결과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기관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심리검사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p> |
| 3. 가정환경 조사 | <p>가. 가정환경 조사는 상담을 먼저 한 후에 실시하거나, 상담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p> <p>나. 가정환경 조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해당 업무 담당 <b>공무원이나 민간전문인력</b>,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p> <p>다. 가족구성원 내역, 부모 또는 양육자의 연령·직업, 가정의 경제 수준 등 가정환경 조사에 필요한 세부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2항 관련)

| 구분      | 방법                                                                                                                                                                                                                                                                                                                                                                                                                                                                                                                                                                                                                                                                                                                                    |
|---------|---------------------------------------------------------------------------------------------------------------------------------------------------------------------------------------------------------------------------------------------------------------------------------------------------------------------------------------------------------------------------------------------------------------------------------------------------------------------------------------------------------------------------------------------------------------------------------------------------------------------------------------------------------------------------------------------------------------------------------------|
| 1. 상담   | <p>가. 최초 상담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b>민간전문인력</b>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실시하거나,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li> <li>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li> <li>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4)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아동보호 또는 치료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li> </ol> <p>나. 최초 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p> <p>다. 상담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p> |
| 2. 심리검사 | <p>가. 심리검사는 상담 결과와 아동의 가정환경 및 심리상태를</p>                                                                                                                                                                                                                                                                                                                                                                                                                                                                                                                                                                                                                                                                                               |

|                   |                                                                                                                                                                                                                                                                                                                                                                                                                                                                                                                                                                                                                                                                                                     |
|-------------------|-----------------------------------------------------------------------------------------------------------------------------------------------------------------------------------------------------------------------------------------------------------------------------------------------------------------------------------------------------------------------------------------------------------------------------------------------------------------------------------------------------------------------------------------------------------------------------------------------------------------------------------------------------------------------------------------------------|
|                   | <p>고려하여 아동의 지능·인지·정서·행동 및 발달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종류의 검사를 선별하여 실시한다.</p> <p>나. 심리검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li> <li>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ol> <p>다. 심리검사 결과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기관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심리검사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p> |
| <p>3. 가정환경 조사</p> | <p>가. 가정환경 조사는 상담을 먼저 한 후에 실시하거나, 상담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p> <p>나. 가정환경 조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민간전문인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다.</p> <p>다. 가족구성원 내역, 부모 또는 양육자의 연령·직업, 가정의 경제 수준 등 가정환경 조사에 필요한 세부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 (제33조제3항 관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2.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
3. 아동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
5. 법 제17조제2호의 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 (제48조 관련)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의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 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3.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4. 자립지원 전담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라. 대학등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

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8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2 | 150    | 300      |
| 나. 법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법 제75조제1항제1호    | 500    | 1,000    |

|                                                                         |                    |     |       |
|-------------------------------------------------------------------------|--------------------|-----|-------|
| 다.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법 제75조제3항<br>제1호의3 | 150 | 300   |
| 라.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5조제3항<br>제1호의4 | 150 | 300   |
| 마. 법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 법 제75조제3항<br>제1호의5 | 150 | 300   |
| 바.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2항          | 250 | 500   |
| 사.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1항제2호       | 500 | 1,000 |
| 아.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3항제2호       | 150 | 300   |
| 자.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3항제3호       | 150 | 300   |
| 차.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5조제3항제4호       | 150 | 300   |